

#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를 위한 한농연 대응활동 방향

한농연중앙연합회 및 농민단체들은 지난 8일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서 영구면세화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같은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 추진에 대한 배경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현재 면세유는 어떻게 감면 받고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①항에 농·어민 등이 농어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는 100% 면세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75%를 감면토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2007년 하반기에는 75%만 감면 받을 수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전액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금 감면 금액은 약 2조억원이다.

## 2. 면세유, 영구면세화를 왜 주장하는 것인가?

### ○ 면세유가 과세유가 될 경우 농어가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음

현재 400만 농어민이 사용하는 면세유는 올 6월말에 일몰이 도래돼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의 생산비가 올라감에 따라 농어가소득이 하락함으로써, 농어가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20% 상승할 경우 농업소득은 최소 5.9%~최고 11.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 국내농산물 가격경쟁력 향상 정책에 역행

동시다발적으로 추진중인 FTA 및 DDA 농업협상 등이 타결되면 농수산물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장 농어민이 겪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서는

대대적인 생산비 절감 정책을 시행하여 자국 농어업을 효과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세, 특별소비세, 주행세 등을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할 경우, 국내 농어업의 자생력 강화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 생산수단으로서의 농어업용 유류에 교통세, 특별소비세, 주행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법 도입취지에 맞지 않음

실제 농기계 등은 이동 수단이 생산수단이고 생산수단에 교통세, 특별소비세, 주행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

- 일몰이 연장 될 때마다 사회적 경비 소요

현재 농어업관련 기관은 농업용 면세유 영구면세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재경부도 농업용 유류에 과세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감면으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몰이 도래하면 현장 농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연장을 위한 사회적 경비가 소요되고 있음



### 3. 요구사항

- 조례특례제한법 개정(제106조 2)을 통한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 추진

일몰이 도래 할 때마다 농어민들은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음

### 4. 실행방안

-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를 위한 입법청원(2.8)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0명의 의원이 서명에 동참하여 국회사무처에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를 위한 입법청원

-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개최(2.8)

국회본청 브리핑 룸에서 농업용 면세유 영구면세 국회 통과를 위한 한농연 등 농민단체 기자회견 개최

- 농업용 면세유 영구면세를 촉구를 위한 재경위 의원 간담회 추진

한농연중앙연합회 임원과 재경위 재경위 의원과의 간담회 추진